제1011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(산업통상부)	1.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안전기준 및 완성검사 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-630호)(신설) ○ 셀프충전설비 및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대한 설치기준과 시설·기술 기준 등 안전기준 신설 ○ 변경완성검사 대상에 셀프충전기 및 연료전지 발전설비 변경공사 추가 ▶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,제36조 ▶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, 제51조	비중요
2	미국 수출확인인증명서 발급 절차의 관한 규정 제정안 (해양수산부)	1. 수출확인증명서 거짓발급신청 등의 조치(신설) ○ 미국에 수산물 수출하려고 할시, 수출확인증명서 신청·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, 수출확인증명서 신청시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증명서 발급을 취소할 수 있음 ▶미국 수출확인인증명서 발급 절차의 관한 규정 제6조	비중요
3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자사주 보유규모·처리실적 공시 강화(강화) ○ 자사주를 발행주식총수 대비 1% 이상 보유하는 상장법인은 보유목적, 보유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연2회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, 직전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비교도 공시항목으로 추가 ▶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	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 (중소벤처기업부)	1.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 추가(신설·강화) ㅇ 신규 지정된 12개 경쟁제품에 속하는 17개 세부제품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신설 ㅇ 재지정된 기존 경쟁제품에 속하는 8개 세부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 강화 ▶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별표2	비중요
5	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 신고사항 추가(신설) ㅇ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 및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추가 ▶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	비중요
		2.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금조달계획 제출(신설) ㅇ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매수를 위한 토지거래허가신청시 자금조달 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화 ▶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,제19조의6	비중요
6	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 단독신고 및 공인중개사 거래 신고 시 제출 서류 추가(신설) ㅇ 단독 신고시 계약금을 입금한 영수증 사본 등을 첨부하게 하여 계약일, 체결 여부 등에 대한 허위신고를 예방 ㅇ 개업공인중개사 신고시에 부동산거래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수령·지불에 따른 영수증 또는 입금내역 등을 첨부토록 제출서류 확대 ▶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	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7	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(인사혁신처)	1. 취업심사대상자 확대(강화) ㅇ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를 3급 이상 퇴직자로 확대하고,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2급 이상 퇴직자로 확대 ▶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, 제32조	비중요
		2.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(강화) ㅇ 건축 · 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 · 단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 –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(다만, 측량 및 수로조사, 품질검사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외) –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「건축사법」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업체 ▶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	비중요
8	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환경부)	1.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공익적 목적의 수입 대상(신설) ㅇ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공익적 목적으로 수입 및 반입이 가능한 경우 규정 ▶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▶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	비중요
		2.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인 야생동물 취급 규모(신설)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의 야생동물 취급 규모 기준 규정 ▶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▶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	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9	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기후에너지환경부)	1. 변경허가 대상(신설) ㅇ 야생생물 영업허가 사항의 변경 ▶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▶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8	비중요
		2. 휴업 · 폐업 시 야생동물 반환 의무(신설) ㅇ 야생동물을 위탁받은 자가 휴업 또는 폐업 시 신고 전에 위탁관리하던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▶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▶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9	비중요
		3. 야생생물 영업의 시설 기준(신설) ㅇ 야생동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시설 기준 규정 ▶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▶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7	비중요
		4. 야생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(신설) ㅇ 야생동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규정 ▶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 ▶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11	비중요
		5. 야생동물 영업자의 교육 의무(신설) ㅇ 야생동물 영업자가 받아야 할 교육 관련 규정 ▶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 ▶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12	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6. 백색목록 지정 시 고려 사항(신설) ㅇ 법률에서 규정한 백색목록 선정 기준(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)을 설명하여 구체화함 ▶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▶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3	비중요
		7. 행정처분 기준(신설) ㅇ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·반입 허가자 및 야생동물 영업자의 행정처분을 구체화함 ▶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	비중요
10	백색목록 지정 고시 제정안 (환경부)	1. 백색목록의 종류(신설) ㅇ 백색목록 선정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백색목록을 지정함 ▶백색목록 지정 고시 제2조	비중요
11	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 산후조리원 평가 시행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화(신설) ㅇ 산후조리업자의 평가서류 제출 의무 ▶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	비중요
		2. 산후조리원 평가지표 설정, 자료제출, 현장조사(신설) ㅇ 산후조리원 평가지표 설정·자료제출·현장조사 ▶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	비중요
		3. 산후조리원 평가결과 구분 및 유효기간 설정(신설) ㅇ 산후조리원 평가결과 구분 및 유효기간 설정 ▶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	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2	유치원 및 초등·중등·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개정안 (교육부)	1. 전문상담교사 기본이수과목 개선(강화) ㅇ 전문상담교사 자격종의 기본이수과목에서 상담실습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규정 ▶유치원 및 초등 · 중등 ·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4조	비중요